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02
----------	------

발의연월일 : 2013. 7. .

발 의 자 : 서경환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중구가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안 제3조)
- 나. 용역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3명의 실국장과 위촉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안 제4조)
- 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필요성, 타당성, 용역사유, 중복성, 용역비 등을 심의한다(안 제7조)
- 라. 용역심의 대상은 학술, 연구용역 2천만원,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 「지방계약법」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시책·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조사, 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학술 용역
2.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3. 제1호, 제2호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성과보고서 등과 같은 용역결과물을 필요로 하여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 용역

제3조(용역의 사전심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담당 실·국장 등 3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울산광

역시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 구정 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 의 회의) ① 심의회 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회 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 사유,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간사 등) 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주무관이 된다.

제9조(용역심의 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 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으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의 경우
2. 전액 국고 및 시비 보조 용역의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심의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용역의 중복검토) 심의회는 심의대상 용역이 기존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산편성 등) ①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 용역의 심의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심의대상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간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용역수

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용역의 평가) ①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제9조의 심의대상 용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평가후 3년 이내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과 용역결과 및 평가 결과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7월 1일 · 서경환의원 외 4명

나. 회부일자 : 2013년 7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의안번호 제1002호)
(2013년 7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서경환 의원)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중구가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함.

나. 주요내용

- 1)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심사(안 제3조)
- 2) 용역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3명의 실국장 과 위촉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안 제4조)
- 3) 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필요성, 타당성, 용역사유, 중복성, 용역비 등을 심의(안 제7조)
- 4) 용역심의 대상은 학술, 연구용역 2천만원,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검토보고자 : 김규협 전문위원)

- 용역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용역의 사전심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 기능, 심의 대상, 용역진행상황 점검, 평가 등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